

	<h2 style="margin: 0;">계절학기 운영규칙</h2>		규정번호	3-3-2
			제정일자	1989.09.01.
	개정일자	2017.03.01.		
	개정번호	Ver.6 총페이지 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칙 제8조 제2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3조에 의한 계절학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설시기) 계절학기는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기간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수업시간 및 장소) ①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은 1학점에 15시간 이상 개설하고, 개설교과목당 1일 설강시간은 4시간 이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실습 교과목과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총장이 지정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② 계절학기는 특별한 경우 총장이 정하는 학교 외부의 일정한 장소에서 이동 수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제4조 (개설과목) 계절학기의 개설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대학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2. 본 대학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제5조 (신청학점) ① 전문학사과정의 계절학기는 최대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계절학기는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3.01.>

④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졸업 등 특별한 사유로 계절학기 최대 수강 학점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제6조 (폐강기준) 동일과목의 수강신청자가 10명 미만일 때는 폐강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으로도 설강 할 수 있다.

제7조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 대상자는 본 대학 재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에 한한다.

제8조 (수업, 시험 및 성적인정) ① 계절학기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매체를 활용한 재택 수업 또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의 수업, 시험 및 성적인정에 대하여는 학칙시행세칙 및 현장실습운영규칙을 적용한다.

제9조 (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개시 4주전에 수강신청 일정을 공고한다.

2. 학기개시 1주 이전에 수강신청 기간을 설정한다.
 3. 수강 희망자는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등록을 필한 후 수강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실습 또는 총장이 인정한 교과목에 한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 (출석부작성)** 과목담당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에 의거 출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운영규칙에 따른다.

제11조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 (1) (개정) 이 규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개정한다.
- (2)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2015학년도 하계방학부터 시행한 현장실습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7.03.01.>